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한 공 청 회

□ 일 시 : 2019. 7. 15 (월) 10:00

□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20호)

## 국 회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공청회개요	1
진술요지	7
서형진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김혁중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7
관련법률안	2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

# 공청회 개요

---

---

## 1. 목 적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 2. 공청회 대상 안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15808,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7. 15(월) 10:00
- 장 소 : 국방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20호)

## 4. 진 술 인 (가나다순)

-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서형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 5. 진행방법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는 국방위 소위원회 회의로 함.

나. 회의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라.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하지 아니함.



# 진 술 요 지







# 서 형 진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

---

## ●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대학원 석사

## ● 주요경력

- 행정고시 38회
- 국방부 획득개발국 획득지원과('96~'98)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98~'01)
-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대외정책과('03~'05)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06~'08)
- 외교안보연구원 교육과견('08~'08)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9~'10)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장('11~'11)
-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전차장갑차사업팀장('11~'13)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장('13~'14)
-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14.1~'16.1)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과견('16.1~'17.1)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17.1.~'18.11.)
- 現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18.11.27~)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정 필요성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서 형 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서형진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저는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과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

우선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별도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왔고,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모두 패망의 비운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적 기술력을 결집하여 국방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 강조하더라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자주국방과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만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떠받치는 기초로서 기술의 발전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방위산업의 발전과 방산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 방산수출 확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국가과학기술의 가장 첨단에 있는 만큼, 민간 산학연과의 기술 교류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인터넷과 전자레인지, GPS, 제트 엔진 등 새로운 문명이기(文明利器)를 창조해 냈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은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산업과 국가경제 발전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AI(인공지능), 무인로봇 등 신기술 등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을 국방에 접목하여 미래 전쟁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다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국방 R&D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된 안보환경에 처해있으며, 이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방향은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통한 강한 군대 건설이며, 이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세계 9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선진국의 국방기술보호와 기술이전 통제도 강화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과거 선진국을 따라잡던 추격형(Fast-Follower) 연구개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독자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First-Mover)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대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방R&D 체계는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군 소요에 기반한 소요추격형(Demand-Pull) R&D 체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면 위협을 식별해서 소요에 반영하고 이후 기술개발을 거쳐 체계에 적용할 때쯤 되면 벌써 기술진부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술개발만큼은 군 소요에 앞서서 신속하고 도전·혁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방식의 경직적이고 관리에 치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문제입니다.

국방R&D 사업도 여타 구매나 양산 사업과 똑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행되어 온 결과, 계약의 특성상 연구과정이나 연구의 성과보다는 연구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에게 연구실패의 위험을 전담시키며 과중한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이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방산업체의 과도한 지체상금이나 부정당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 민간 연구소 등의 국방R&D 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R&D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는 계약방식의 현 국방R&D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안 주요 내용과 법률 제정시 기대효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앞서 말씀드린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재 국방R&D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도전기기술개발 제도의 신설, 국방R&D 수행방식으로 협약제도의 도입, 성실수행인정제도의 확대,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확대 등이 중점 법안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번 제정법에서 새롭게 정의된 ‘미래도전기기술’이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아니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로서 국방연구개발의 범주에 기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이외 새롭게 ‘미래도전의 연구개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요추격형(Demand-Pull) R&D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형 연구개발(First-Mover)로 전환하는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 법률에서는 계약방식으로만 수행되어온 국방연구개발 사업에도 국가R&D와 같이 협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계약방식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성실수행인정 적용범위 확대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등 제도개선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방R&D에 협약제도가 도입되고 성실수행인정 대상이 확대되면 방산업체의 개발실패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연구 참여 인센티브가 올라가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우수 민간 기관의 국방R&D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중점 법안 내용 이외에 방위사업법과 타 법률의 조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인용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확산과 실용화,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기타 법안 내용들도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 됩니다.

## [마무리 말씀]

저는 앞서 강조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제안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방위원님들께 이 법률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 제정의 의미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이후 현 방위사업법의 모법(母法)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국방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선도하면서 안보적으로는 자주국방의 기초를 다지고 산업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미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화첨단화된 정예 강군을 건설하고 방위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1970년대와 같은 새로운 법률 체계와 새로운 국방R&D 수행체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고 계류되어 있는 방위산업에 관한 별도 법률도 같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중대한 입법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국방위원님들께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과거 50년의 빛나는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기술  
주권의 확립과 자주국방의 완성 및 세계적 수준의 방산경쟁력 확  
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김 혁 중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 ● 주요학력

- 고려대 법학과 학사
- 美 아메리칸대 대학원 법학석사

## ● 주요경력

- 前. 제9기 사법연수원 법무 수료
- 前. 육군 제50사단 검찰관 / 제36사단 법무참모
- 前. 국방부 조달본부 내자계약 / 외자계약 책임법무관
- 前. 육군본부 법제과장 / 법무과장
- 前.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前. 국방부 법무담당관 / 고등군사법원 제1부장판사
- 前.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 現.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특이사항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용역 수행자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제정의 필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혁중

## 1. 법률제정의 배경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혁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자주국방 확보가 곧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더불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방위사업법”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효율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부처의 경우 예전부터 기본법과 산업 진흥 및 R&D 관련 법을 분리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 과학기술 발전에 예산·인력 활용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국방 R&D는 정부 R&D 중 과기정통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10개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소관 기술 진흥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조항을 이관하면서 국방 R&D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2. 현실태 및 문제점

현재 방위사업법에서의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한 조항은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지식재산권 소유, 기술인력 처우, 기술료 징수 등이며 전체 64개의 조문 중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조항은 7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적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적 성격만을 강조하다보니 방위산업을 단지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국방연구개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법제적 뒷받침은 미흡하여 결국 국가적 R&D 역량을 활용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추진 기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구개발 고유의 특성인 실패와 재도전, 첨단기술의 신속한 접목 등을 국방연구개발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체계업체들은 수백개가 넘는 2차 및 3차 협력업체들의 사소한 과실이 발견되는 경우에 계약심의회를 통한 부정당업자제제, 원가회계심의회를 통한 이윤의 삭감, 원가 인증 심의회를 통한 원가인증의 취소 그로 인한 원가 인증이윤취소, 군수 조달분과위원회 및 산업부 청문을 통한 방산업체 지정취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해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위협은 방위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협이고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방분야 연구개발업체들은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운에 의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3. 법률제정의 목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현행 방위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조항의 이관과 함께 주요 국방 R&D 혁신 제도개선 사항을 도입하여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체계 구축을 위하여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해주고, 첨단 분야 민·군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법률·제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궁극적으로 국방과학기술 혁신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4.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현재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제안된 법률인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외에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제안된 법률안으로 “방위산업발전법”, “방위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과 규정 분야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나,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등 일부 세 가지 법안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조문도 있어 아래 검토내용도 이를 고려하여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개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패 위험성이 높은 고난도 연구개발에 대한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DARPA(국방고등기술연구원)와 같이 국가 안보를 위한 자유로운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나. 협력체계 구축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국방 R&D는 곧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특히 국방과학기술 진흥은 국방 내부의 일이 아닌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방적인 R&D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사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민과 군의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계약 방식 외 협약 방식 도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 방식 외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 체결부터 사업 관리, 사업비 산정 등 전체적으로 국방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의 틀을 금번 제정안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혁신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새로운 사업 체결 방식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방위사업 진흥을 규정하는 법률안보다는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라.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방위산업은 연구개발의 성격이 강하며 체계장비는 양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예컨대 일부 구성품이나 부품의 공급은 연구개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는 「국가계

약법」 상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할 때만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이행시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조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원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금번 제정 안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의 협약 체결 방식 도입과 함께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시의 제재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방위사업 진흥을 규정하는 법률안 보다는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마.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국가 R&D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방 R&D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기술을 활용하고 수출 할 때에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우수한 업체들이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영리기관도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과인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방위사업 진흥을 규정하는 법률안 보다는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5. 종합의견

정부의 방산정책이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개방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방산비리 프레임에 의한 수사 감사가 계속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고 처벌 위주의 방산정책이 지속되면서 방산업체는 최소 수준의 가동률과 생산기반 유지도 보장받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전히 방위사업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남아 있어 국방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국방연구개발은 보수적인 판단을 통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는 체계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현행 체계로 다양한 양상의 미래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려에서 방위사업법과 분리된 국방과학기술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방위산업제도 운영에 대한 반성이므로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 분야 업계·연구기관 등도 국방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군 간의 기술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속도감

있는 혁신의 실천과 성과 창출을 통하여 국방 분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이철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08
----------	-------

발의연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이철희 · 김민기 · 김종민  
백혜련 · 박 정 · 안규백  
강훈식 · 민홍철 · 원혜영  
금태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 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 대학 및 그 밖의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  
관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  
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의 연구  
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  
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안 제10조제1항).
-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 사.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제기획,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안 제18조).

아.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07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미래도전기술(未來挑戰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소요(所要)에 기반하지 아니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그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

나. 미래도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다.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기술개발 추진

②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전력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국방연



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에 관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및 그와 연관된 양산·운영유지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연

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장비 및 시설을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공동 소유 기관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개발성과물을 전담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연구개발주관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개발성과물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국방연구개발 관련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줄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부와의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 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
  5.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의 전력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4조(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정보
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정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를 제외한 지식·정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

통

2.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대학·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5.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등에 연구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연구시설·장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우수 인력 확보 및 장려금 지급) ①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군정비부대(군정비창을 포함한다) 또는 군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기획·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

②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2. 제14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3. 제16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촉진

4.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5.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6.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 및 착수금·중도금에 대한 분석 등의 지원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방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

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2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 칙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국방과학기술증진에 관한 중·장기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및 실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지체상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제7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행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제14조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행한 행위 중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기획·평가 및 분석의 지원에 관한 행위 및 이로 인한 권리·의무는 이 법의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당시 국방기술품질원의 소관 사무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9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방위사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방위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